

제123회 이리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

임시회 회의록

학교장	위원장
강창경	이덕순

○ 일 시 : 2018년 10월 10일(수요일) 11시 ~ 12시

등록번호	이리초-제123
등록일자	2018.10.2
생산부서	행정실
공개여부	공개

○ 장 소 : 운영위원회실

○ 참석위원 : 이덕순, 안미란, 안미라, 강창경, 오미란, 양승호, 정진교(7명)  
참석교직원 : 행정실장, 방수정

○ 회 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건심의
7. 기타사항 협의
8. 폐회

○ 상정안건

1. 2018학년도 학사일정 변경(안)
2. 2019학년도 교육과정 워크숍 운영계획(안)
3. 2019학년도 5~6학년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안)
4. 이리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5. 2018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경예산(안)
6. 이리초등학교 학칙 개정(안)

먼저 의사일정을 2018년 10월 10일 1일간으로 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지난 10월 10일 제출된 2018학년도 2018학년도 학사일정 변경(안) 외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그럼 의사일정은 1일간으로 하고, 6건의 일괄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봉 3타)

위원장(이덕순) 제1안 2018학년도 학사일정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오미란) (제안서를 보며 설명하다.) 지난 8월 24일 태풍 솔릭으로 휴업일로 지정됨에 따라 수업일수가 1일 줄어든 1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법령상 정해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므로 2학기 학사일정 및 방학은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학교장(강창경)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상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입니다. 만약 휴업으로 법령상 수업일수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방학일수를 줄여서 수업일수를 맞춰야합니다. 본교는 변경전 191일, 변경후 190일로 법령상 수업일수를 충족하였으므로 2학기 학사일정은 변경이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제1안을 원안대로 심의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덕순)	제3안 2019학년도 5~6학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오미란)	(제안서를 보며 설명하다.) 2019학년도 6~6학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과목은 영어, 예체능(음악, 미술, 체육), 실과 5과목입니다. 사전에 교원 협의를 통해 교과별로 우선 순위(1~3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영어, 예체능, 실과 과목을 검인정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인정 교과서는 각 과목별로 8~9종이 있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순서 차이 정도입니다. 사전에 교원 협의를 통해 각 교과별 우선순위(1~3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배부된 추천 의견서에 추천사유를 명시하였으니 읽어보시고 교과서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배부된 추천 의견서 및 교과용 도서를 살펴보시고 추가 의견이나 순위에 이견 있으신 분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부조리 예방 안내문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로서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출판사는 교과용 도서 선정 관계자에게 교과서 견본 외에 자료를 무상 배포, 발전기금, 연수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이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불공정행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

교육활동 불참여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1조-복장, 두발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자율에 맡기되 이에 의견이 있을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본교 구성 위원 10명- 교사 4명, 학생 4명, 학부모 2명)에서 정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용모관련하여 제한사항을 요구하였으나 원칙적으로 용모관련하여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 방침이어서 제한사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12조-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 생활규정에는 일기장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인 수첩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규정들은 읽어보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이덕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덕순)      학생들도 규정개정에 참여하고 또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되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 같습니다.
- 답변자(오미란)      네. 학생들도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규정을 더 잘 지킬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위원장(이덕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이덕순)      제4안을 원안대로 심의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들                  없습니다.
- 위원장(이덕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이덕순)      제5안 2018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제5안을 원안대로 심의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이덕순)	제6안 이리초등학교 학칙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양승호)	(제안서를 보며 설명하다.) 본교 학칙은 2013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개정된 법령 및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지침에 의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신·구문대비표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학급수 및 학생수 정하는 주체가 전라북도 교육감이므로 이를 개정하였습니다.(개정전 익산교육청교육장), 제6조 수업일수 개정전에는 가, 나, 다 항목으로 나뉘어 수업일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법령상 19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90일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제23조, 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은 현재 사라진 제도이므로 관련 내용 삭제하였고, 제27조 학칙 개정 발의 및 개정안 공고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결보강계획, 학생 생활규정 관련 내용은 도교육청 지침 및 별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이덕순)	제6안을 원안대로 심의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